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308호, 2014. 1.21공포, 2014. 7.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업력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와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여 지정(안 제17조의2 제1항)

-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성과보상기금 운용요강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30조의2 제2항)
- 다.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함(안 제30조의3 제1항)
- 라. 법 제35조의4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과보상기금의 수입계획,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30조의5)
- 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결산기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함(안 제30조의6 제1항)
- 바. 법 제35조의6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공제회계 및 책임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공제 관련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30조의7)
- 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안 제30조의8)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전화 : 042-481-4469, Fax : 042-481-327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의 제목“(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을“(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업력이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와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3.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의 제목“(인증 취소의 세부절차)”를“(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제30조의9로 하고,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성과보상사업단을 둔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성과보상기금 운용요강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 1명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성과보상기금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보험·금융·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8명 이내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의4(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30조의5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변경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30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5(기금운용계획안) 법 제35조의4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보상기금의 수입계획
2.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의6(책임준비금의 적립·운용)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결산기마다 법 제35조의5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7(공제규정) 법 제35조의6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가입대상, 계약 조건 및 절차, 계약 해지 및 환급금, 공제금 지급 등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제회계 및 책임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4. 공제 관련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제가입 모집 등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발굴·지정·육성과 이를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